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우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 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α 증권 투자신탁 제S-1호[주식-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α 증권 투자신탁 제S-1호[주식-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우리 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α 증권 투자신탁 제S-1호[주식-파생형]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13년 7월 26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년 8월 9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우리자산운용(주) / 각 판매회사 |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6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6
3. 모집예정금액	6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6
5. 인수에 관한 사항	6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7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7
4. 집합투자업자	8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8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8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2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4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8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2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3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26
1. 재무정보	2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8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2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2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등에 관한 사항	33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33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4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5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5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6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6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38
3. 투자신탁의 공시에 관한 사항	39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2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43
[붙임] 용어풀이	4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우리 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α 증권 투자신탁 제S-1호[주식-파생형] (펀드코드: 20622)		
클래스(종류)	Class A1	Class C1	Class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2786	62981	9279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파생형)
- 3)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5)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기준>

집합투자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Class 구분	판매 기준
Class A1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 C1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음
Class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짜리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우리 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α 증권 투자신탁 제S-1호[주식-파생형] (펀드코드: 20622)		
클래스(종류)	Class A1	Class C1	Class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2786	62981	9279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1999.10.18	최초 설정
2004.07.05	미수금 관련 변경 등
2004.08.12	채권편입비 변경 등
2005.06.07	Late Trading 적용 및 환매수수료 부과기간등의 변경 등
2005.07.26	펀드명칭변경(LG 삭제) 등
2006.08.31	주식형펀드시가총액비중기준일 변경 등
2006.12.11	보수·주식 편입비 변경(20%이상 90%이하에서 20%이상 삭제) 및 멀티클래스 신설 등
2007.02.28	투자증권 차입(20%) 가능
2008.01.31	주식편입비 변경(90%이하 → 100%이하) 등
2008.05.06	투자대상자산(주식선물)의 추가 등
2009.05.04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전면개정 (프런티어 인덱스 플러스α 파생상품투자신탁 제S-1호 → 우리 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α 증권 투자신탁 제S-1호[주식-파생형])
2009.05.28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의 건
2009.08.14	운용팀관련사항 변경의 건 등(인덱스운용팀 → 인덱스&ETF운용팀)
2010.05.03	Class C1 판매보수율 인하의 건(연 1.1% → 연 1%), 미설정된 Class C2, C3, C4 삭제의 건 및 이에 따른 Class C1 가입자격 변경, 이익분배 명확화, 세제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신탁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갱신의 건을 포함한 최근 결산기 정보 반영의 건 등
2010.09.16	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윤주영 → 배광웅), 자본시장법 시행령(임의해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의 건 등
2011.01.27	투자신탁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갱신의 건을 포함한 최근 결산기 정보 반영의 건 등
2011.12.06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신고서(투자설명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우리은행 일반사무관리부 분사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우리은행→우리펀드서비스) (2011.08.08. 영업개시)
2012.02.28	투자위험 등급 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 등급 변경(1등급 → 2등급)
2012.03.08	파생상품 투자한도 변경 (10% 초과 → 60% 이하)
2012.04.27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배광웅 → 이진아, 2012.04.16. 변경)
2012.11.30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공시 및 보고서 등)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2013.08.0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박정익 → 주중현, 2013.08.09. 변경)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여의도파이낸스타워 (대표전화: 02-789-03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3.07.26. 현재)

1)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이진아	1975	팀장	15개 (팀공동)	6,075억 (팀공동)	- 연세대학교 화학과 - 연세대학교 대학원 증권/금융공학 석사 - 효성 기획관리팀 - 동원투신운용 리스크관리팀 - 현재 우리자산운용 인덱스운용팀장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주중현	1981	대리	-	-	- Queen's University 컴퓨터공학과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SC 제일은행 소매금융총괄본부 -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현재 우리자산운용 인덱스운용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덱스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1,006억(2개)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윤주영	2005.07. ~ 2010.08
	배광웅	2010.08. ~ 2012.04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박정익	2012.09. ~ 2013.08.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2)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

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설정일
A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미설정
C1	가입제한 없음	1999-10-18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미설정

나.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클래스 (종류)	수수료		보수 (연간,%)			
	선취판매	환매	판매	운용	신탁	사무관리
A1	납입금액의 1%	없음	0.4	0.21	0.03	0.0
C1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1.0	0.21	0.03	0.0
C-W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0.0	0.21	0.03	0.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본 신탁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하를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하로 투자하고, 국내주식에 자산총액의 100%이하, 채권에 자산총액의 50%미만을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KOSPI200 지수 100%**

주1) KOSPI200: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200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된 주가지수 (지수현황은 www.krx.c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주2)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주식	100%이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채권	50%미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40%이하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B- 이상인 것 및 양도성 예금증서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60%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 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5%이하 (ETF 30%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다만,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	자산 총액의 20%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p>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 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p> <p>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4.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8.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행위</p> <p>9. 투자신탁채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투자비율 제한의 예외</p>	<p>① 다음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채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항제 6 호 내지 제 10 호, 제 19 조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3 호, 제 5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③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항제 7 호 및 제 19 조제 1 항제 2 호, 제 5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① 주식에 대한 투자전략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합니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를 투자합니다.

②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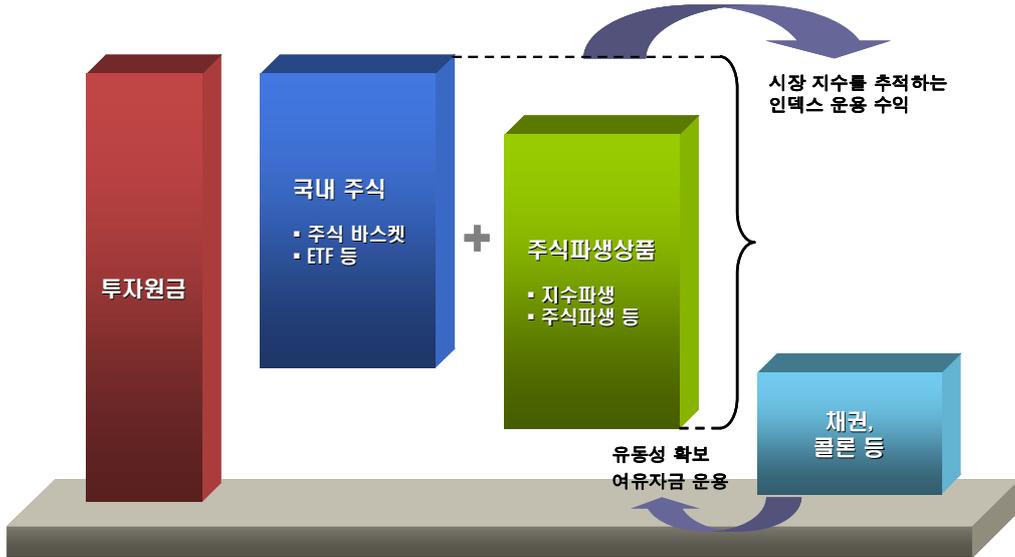
- 주식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하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주로 편입합니다.
- 주가지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만으로 인덱스 추종이 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으로 개별주식으로 구성된 인덱스바스켓 매매에 비하여 거래가 간편하고 가용 현금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으나, 파생상품 자체의 수급 등에 따라 인덱스와 일시적인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으므로 롤오버(Roll-over)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개별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등락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③ 채권 등에 대한 투자전략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이하 “채권”이라 합니다)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을 투자합니다.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B- 이상인 것 (이하 “어음”이라 합니다)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합니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합니다)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합니다.

④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수익과 위험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덱스펀드로, KOSPI200지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비교지수(인덱스)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인핸스드 인덱스(Enhanced Index) 펀드로 인덱스 수익률을 복제하는 기본 포트폴리오(Core

Portfolio) 외에 차익거래, 보유 주식의 대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초과수익 추구전략(Enhancement Strategy)을 통하여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⑤ 이 투자신탁은 인덱스 초과수익의 추구를 위하여 기회 발생시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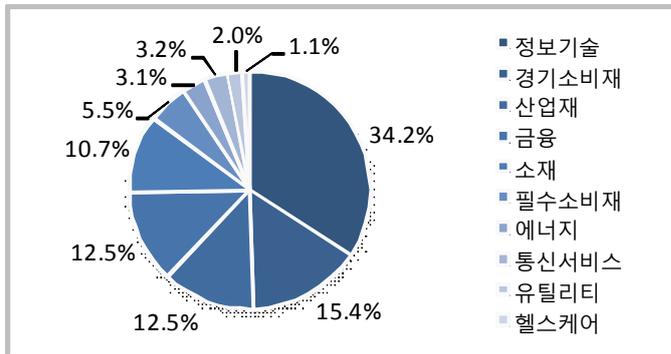
⑥ 비교지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를 'KOSPI200 지수 × 100%'로 정했습니다.

주1)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 합니다.

※ 지수 소개 (2013.04.22. 기준)

- 지수명 : KOSPI200
- 구성종목수 : 200종목
- 기준일 : 1990년 1월 3일 (기준지수: 100pt)
- KOSPI200은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로서, 선물 및 옵션 거래에 적합하도록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합니다. (유동주식 가중 시가총액 방식)
- 업종별 구성현황 :



* 비교지수에 관한 정보는 자료 작성일 현재까지 인덱스 산출기관 또는 지수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성종목 또는 산출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역은 해당 지수 산출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http://www.krx.co.kr/por_kor/m1/m1_4/m1_4_3/m1_4_3_2/UHPKOR01004_03_02_01.html)

[허용 추적오차의 범위 & 포트폴리오 재조정 주기 및 기준 등]

① 당사는 인덱스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추적오차 관리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실시함

니다.

- ② 매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리밸런싱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개월동안 배당차감후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지수 대비 1%p 이상 하회할 경우 수시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단, 선물 베이스 등 포트폴리오 이외의 영향은 제외됩니다. 또한, 인덱스의 정기변경 및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 ③ 적법한 내부지침 변경 절차에 따라 인덱스 운용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적오차와 리밸런싱에 관한 기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 ① 추종하는 인덱스와의 추적오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적오차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매분기 또는 필요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2) 수익구조

‘우리 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α 증권 투자신탁 제S-1호[주식-파생형]’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를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되, 주식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하가 되도록 투자하여 KOSPI200지수 등락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손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됩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해외파생상품 등의 매매시 시장충격 및 관련비용 지출, 상/하한가, 거래정지,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당사 활용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등으로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이라 예상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 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투자신탁은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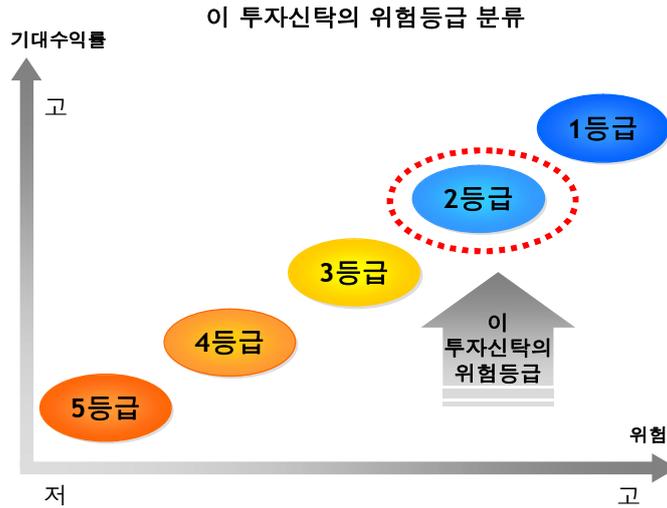
3)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기준가격 오류 등)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투자신탁의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 주식형 투자신탁이므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여 국내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국내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국내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 등급 기준>

구분	분류기준	위험평가 점수	집합투자기구 예시
Level 1	매우 높은 위험	20점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등에 집합투자규약상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다만, Level2에서 지정한 인덱스 운용전략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원금비보장형 중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구조화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실물(상가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개발형/임대형 포함)
Level 2	높은 위험	20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등에 집합투자규약상 최대 5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 - 국내 주식시장 지수를 추적 대상으로 하는 인덱스 운용전략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및 KOSPI200 지수를 추적 대상으로 하는 인덱스 운용전략 주식파생형 집합투자기구.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와 파생-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원금비보장형 중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구조화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3	중간 위험	40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등에 집합투자규약상 최대 5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 이하인 구조화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규약상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4	낮은 위험	60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및 투자적격등급(BBB-이상) 채권에 최소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장내차익거래목적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5	매우 낮은 위험	80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유형의 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가장 위험이 높아 위험평가점수가 낮은 1등급에서 위험평가점수가 높은 5등급까지 5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 매입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나.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구분	펀드코드	판매 기준
Class A1 수익증권	92786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 C1 수익증권	62981	가입제한 없음
Class C-W 수익증권	92790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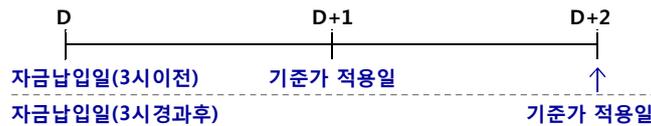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가.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종 류		Class A1	Class C1, C-W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환매시

라.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 [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마.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증권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바.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집합투자계약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환매가격
 -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⑤ 및 ⑥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①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⑨ ⑧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②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⑪ 집합투자업자는 ⑩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계약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⑫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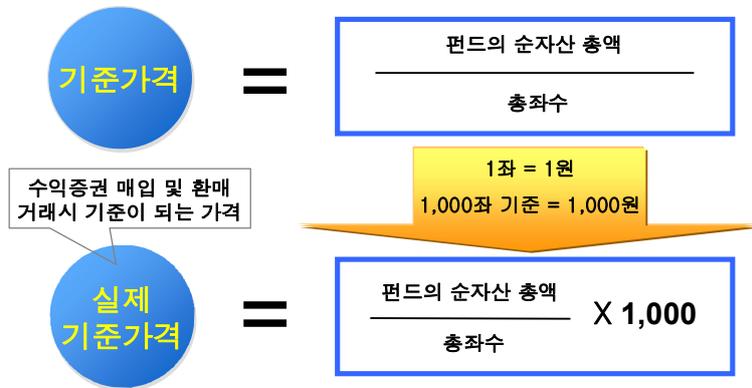
1)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구분	내용
계산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계산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지하지 않습니다.
공고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서류공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woori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 주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클래스별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별로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1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납입금액의 1.0%	-	-	-
C1	가입제한 없음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보유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종류)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총보 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A1	0.21	0.4	0.03	0.0	0.0024	0.6424	0.6557	0.0779
C1	0.21	1.0	0.03	0.0	0.0024	1.2424	1.2557	0.0779
C-W	0.21	0.0	0.03	0.0	0.0024	0.2424	0.2557	0.0779
지급시기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	-	사유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

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 회계연도: 2011.10.18 ~ 2012.10.17]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1.10.18 ~ 2012.10.17]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4)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4	305	459	91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6	309	467	936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7	401	704	1,60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9	406	711	1,619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	78	137	31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6	83	145	330

-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를 0%,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총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2) 종류별로(A1,C1) 총보수·비용비율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가.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 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

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가능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1기(2012.10.18 - 2013.04.17)_반기	회계기간미경과	해당없음
제 10기(2011.10.18 - 2012.10.17)	대주회계법인	적정
제 9기(2010.10.18 - 2011.10.17)	대주회계법인	적정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대차대조표		
	제 11기_반기	제 10기	제 9기
	(2013.04.17)	(2012.10.17)	(2011.10.17)
운용자산	4,926,771,278	5,205,109,292	5,531,792,275
증권	4,559,252,549	4,901,136,480	5,334,625,95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67,518,729	303,972,812	197,166,32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37,030,029	11,795,933	20,216,853
자산총계	5,263,801,307	5,216,905,225	5,552,009,12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66,334,790	8,219,672	10,070,413
부채총계	266,334,790	8,219,672	10,070,413
원본	5,013,336,367	4,907,833,016	5,510,224,859
수익조정금	-4,042,261	-38,873,268	-105,698,199
이익잉여금	-11,827,589	339,725,805	137,412,055
자본총계	4,997,466,517	5,208,685,553	5,541,938,715

항 목	손익계산서		
	제 11기_반기	제 10기	제 9기
	(2012.10.18 - 2013.04.17)	(2011.10.18 - 2012.10.17)	(2010.10.18 - 2011.10.17)
운용수익	-9,790,490	342,141,351	135,128,628
이자수익	6,484,056	16,872,303	31,458,559
배당수익	49,059,446	65,938,989	73,231,785
매매/평가차익(손)	-65,333,992	259,330,059	30,438,28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635,460	1,703,230	2,289,99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635,460	1,703,230	2,289,990
기타비용	193,345	764,796	1,076,267
당기순이익	-10,619,295	339,673,325	131,762,371
매매회전율	19.33	129.26	214.45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 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제11기(2013.04.17) 반기		제10기(2012.10.17)		제9기(2011.10.17)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367,518,729		303,972,812		197,166,325
1. 현금및현금성자산	310,603,284		231,046,242		147,677,875	
2. 예치금						
3. 증거금	56,915,445		72,926,570		49,488,450	
대출채권		200,000,000		300,000,000		800,000,000
1. 골론	200,000,000		300,000,000		800,00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4,360,866,740		4,601,136,480		4,534,625,950
1. 지분증권	4,131,390,950		4,224,489,400		4,084,011,35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29,475,790		376,647,080		450,614,600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37,030,029		11,795,933		20,216,85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22,781,419		7,114,160		5,780,413	
2. 정산미수금	2,977,500		4,275,000		13,690,000	
3. 미수이자	296,324		406,773		697,440	
4. 미수배당금	10,974,786				49,000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5,265,415,498		5,216,905,225		5,552,009,128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66,334,790		309,017,209		41,784,269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64,138,780				6,154,020	
2. 정산미지급금	2,100,000					
3. 해지미지급금			7,656,947			
4. 수수료미지급금	96,010		562,725		157,883	
5. 기타미지급금			300,797,537		35,472,366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66,334,790		309,017,209		41,784,269
자 본						
1. 원 본	5,013,336,367		4,907,833,016		5,510,224,85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4,042,261		0		0	
3. 이월잉여금	-10,213,398		0		0	
(발행좌수 당기: 5,013,336,367 좌 전기: 4,907,833,016 좌 전전기: 5,510,224,859 좌) (기준가격 당기: 997.15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4,999,080,708		4,907,833,016		5,510,224,85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265,415,498		5,216,850,225		5,552,009,128

3)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11기(2012.10.18-2013.04.17) 반기		제10기(2011.10.18-2012.10.17)		제9기(2010.10.18-2011.10.17)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55,543,502		82,811,292		104,690,344
1. 이 자 수 익	6,484,056		16,872,303		31,458,559	
2. 배당금수익	49,059,446		65,938,989		73,231,785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97,436,677		1,280,343,632		2,558,582,514
1. 지분증권매매차익	62,520,706		636,725,278		889,583,205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134,700,000		642,145,000		1,666,505,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2,191		2,494		3,753	
7. 기타거래차익	213,780		1,470,860		2,490,556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73,199,732		1,053,264,323		2,551,852,036
1. 지분증권매매차손	65,456,686		529,203,693		909,970,246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138,710,460		523,998,230		1,641,694,990	
4. 지분증권평가차손	68,762,746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42,720		62,400		186,800	
8. 기타거래차손	227,120					
운 용 비 용		193,345		764,796		1,076,267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93,345		764,796		1,076,267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0,412,898		309,125,805		110,344,555
적당순이익(또는 적당순손실)		-0.004071719		0.062986211		0.02002541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우리 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α 증권 투자신탁 제S-1호[주식-파생형]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10.18 - 2013.04.17	49	49	7	7	6	6	50	50	
2011.10.18 - 2012.10.17	55	54	5	6	11	12	49	49	
2010.10.18 - 2011.10.17	64	63	9	10	18	20	55	55	

나. 우리 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α 증권 투자신탁 제S-1호[주식-파생형] Class C1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10.18 - 2013.04.17	50	50	4	4	3	3	50	50	
2011.10.18 - 2012.10.17	56	54	5	5	11	11	50	50	
2010.10.18 - 2011.10.17	66	65	7	7	17	19	56	55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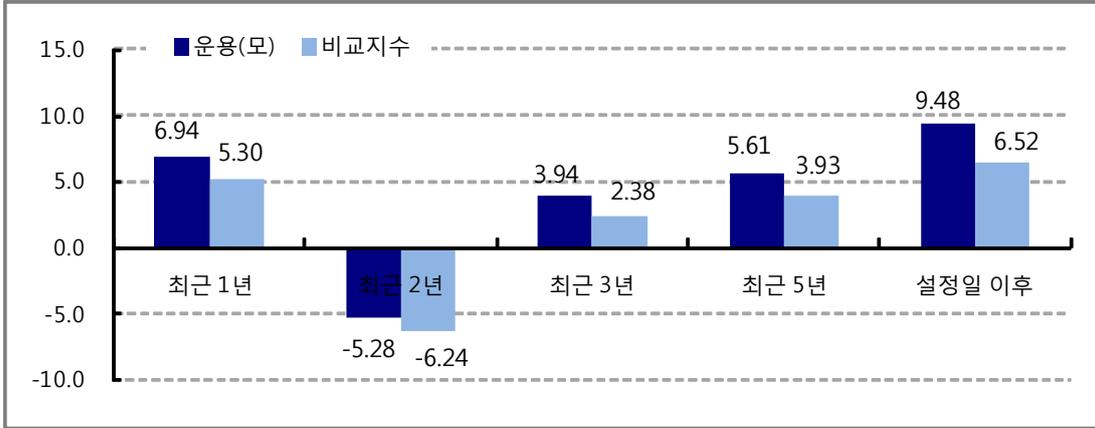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

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종류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20726- 20130726	20110726- 20130726	20100726- 20130726	20080725- 20130726	설정일이후- 20130726
운용(모)	1999.10.18	6.94	-5.28	3.94	5.61	9.48
비교지수		5.30	-6.24	2.38	3.93	6.52
C1	1999.10.18	5.62	-6.16	2.89	4.42	8.84
비교지수		5.30	-6.24	2.38	3.93	6.52

주1) 비교지수: KOSPI200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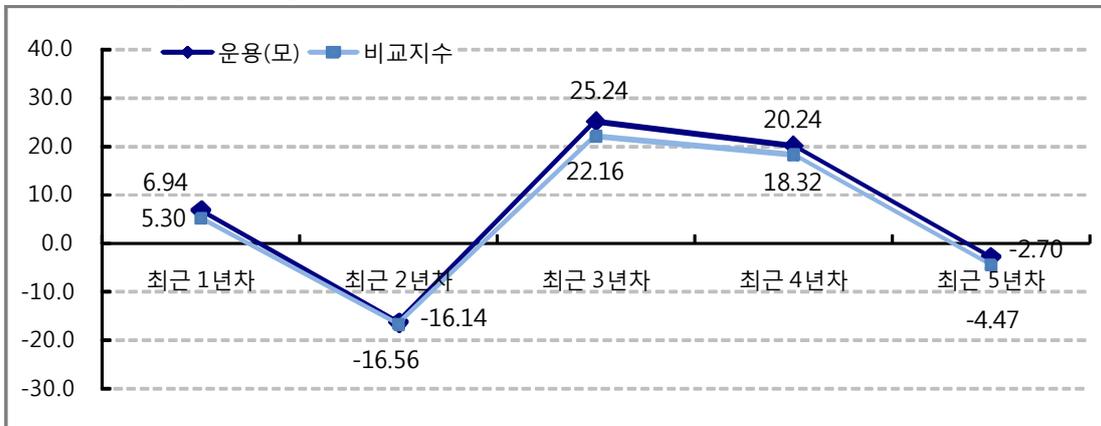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연도별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종류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20726- 20130726	20110726- 20120726	20100726- 20110726	20090724- 20100726	20080725- 20090724
운용(모)	1999.10.18	6.94	-16.14	25.24	20.24	-2.70

비교지수		5.30	-16.56	22.16	18.32	-4.47
C1	1999.10.18	5.62	-16.67	23.80	18.73	-4.00
비교지수		5.30	-16.56	22.16	18.32	-4.47

주1) 비교지수: KOSPI2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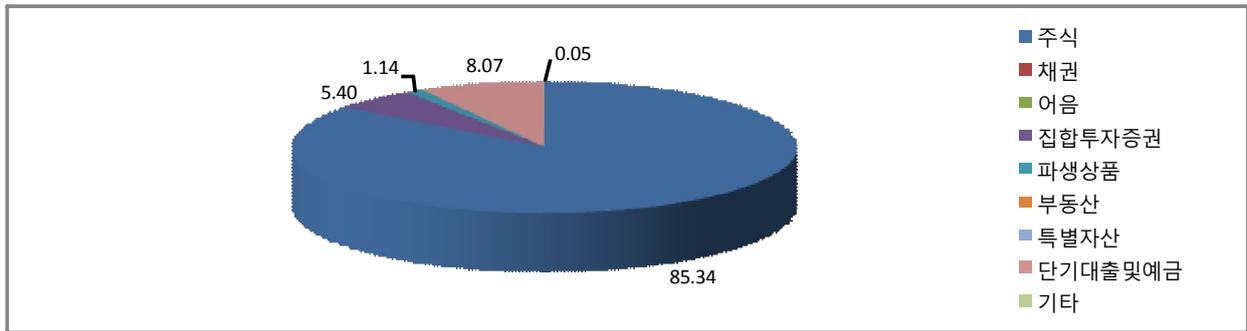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신탁의 자산구성 현황



[2013.07.17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42	0	0	3	1	0	0	0	0	4	0	49
	(85.34)	(0.00)	(0.00)	(5.40)	(1.14)	(0.00)	(0.00)	(0.00)	(0.00)	(8.07)	(0.05)	(100.00)
합계	42	0	0	3	1	0	0	0	0	4	0	49
	(85.34)	(0.00)	(0.00)	(5.40)	(1.14)	(0.00)	(0.00)	(0.00)	(0.00)	(8.07)	(0.05)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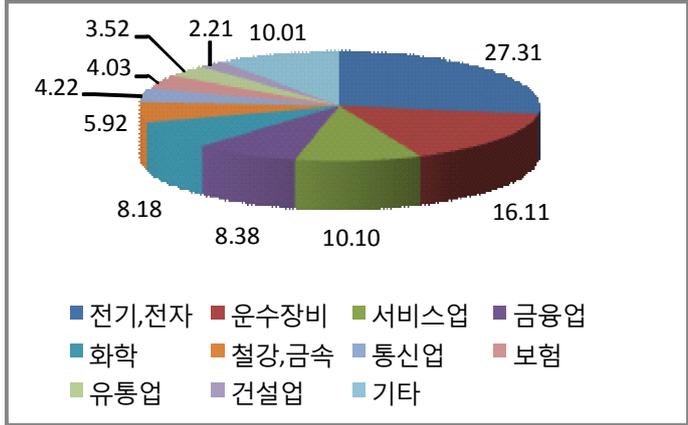
4)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구성 현황

- | | |
|-------------------------|---------|
|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2013.07.17 현재 / 단위 : 억원,%]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11	27.31
2 운수장비	7	16.11
3 서비스업	4	10.10
4 금융업	3	8.38
5 화학	3	8.18
6 철강,금속	2	5.92
7 통신업	2	4.22
8 보험	2	4.03
9 유통업	1	3.52
10 건설업	1	2.21
11 기타	4	10.01
합 계	42	99.99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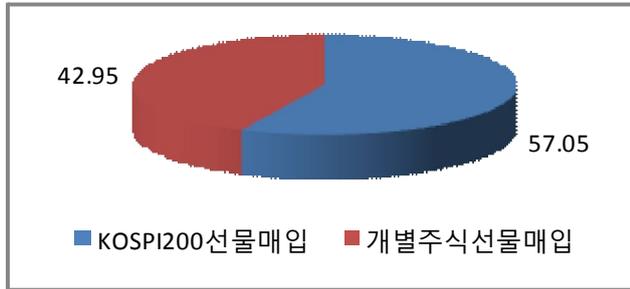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2013.07.17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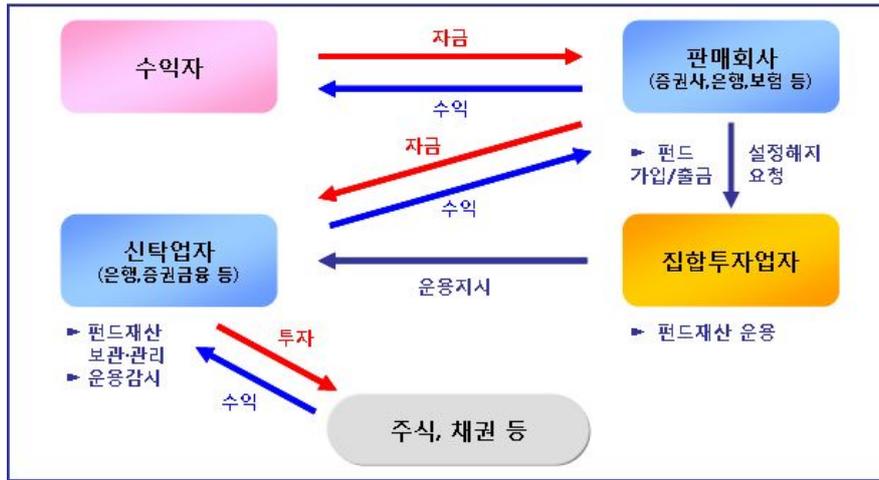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KOSPI200선물매입	2	57.05
개별주식선물매입	2	42.95
합계	4	100.00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여의도파이낸스타워 (연락처: 02) 789-0300 / www.wooriam.com)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자본금	333억원
주요주주현황	우리금융지주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기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나.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우리펀드서비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십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구분	2013.03.31	2012.03.31	구분	2013.03.31	2012.03.31
현금 및 예치금	63.3	60.2	영업수익	30.5	33.0
유가증권	1.2	0.4	영업비용	29.8	29.2
대출채권	1.7	1.7	영업이익	0.7	3.8
유형자산	0.6	1.0	영업외수익	1.0	0.0
기타자산	13.2	14.3	영업외비용	0.1	2.0
자산총계	80.2	77.7	경상이익	1.6	1.9
예수부채	0.4	0.5	법인세비용	0.7	1.1
기타부채	15.3	13.5	당기순이익	0.9	0.8
부채총계	15.7	14.0			
자본금	33.3	33.3			
자본잉여금	13.7	13.7			
이익잉여금	17.5	16.7			
자본조정	0.0	0.0			
자본총계	64.5	63.7			
부채와자본총계	80.2	77.7			

4) 운용자산규모

[2013.07.26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14,482	25,230	3,809	2,341	12,622	8,487	16,097	175	55,028	138,270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연락처: (02)756-0505)
홈페이지	www.shinhan.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연락처: (02) 6300-7200)
홈페이지	www.woorifs.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나.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채권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연락처: (02) 399-3350 - 홈페이지: www.koreabp.com
<u>NICE피앤아이</u>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KIS채권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에프엔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빌딩 4층 - 연락처: (02) 721-5300 - 인터넷홈페이지주소: http://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

나.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 총회 등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류,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5)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우리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woori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

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 펀드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나.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합니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집합투자규약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주1)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이외의 변경사항은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회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wooriam.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게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장내·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am.com)에 공시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계약금액(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날까지 공시)
- ②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날까지 공시)
- ③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상금액(매일 공시)

주1) 다음의 경우에는 위 ③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험에 관한 지표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 지표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계			
우리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주식	2,026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가. 투자증권 거래

구 분	선정 기준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주기: 분기 1회 ○ 평가자: 채권운용역 및 채권트레이더 ○ 평가기준: 리서치 35%, 거래능력 50%, 중개사리스크 5%, 기타 10%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그룹 8개사, B그룹 12개사를 선정 - A그룹 전체에 분기약정의 60% 이상, B그룹 전체에 분기약정의 40% 이하 목표로 거래
국내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탐방 주선, 리서치 지원, 정보 제공, 요청 자료 응대 및 주문 체결 능력 등 ○ 기간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등급별로 차등 배분 실시
해외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주기 : 매 분기 별 ○ 평가자 : 글로벌운용팀 운용역 등 ○ 평가기준 : 전반적인 해외주식 주문 체결 능력, 리서치의 제공, 후선업무 처리 지원 등을 감안하여 거래 적격 중개회사 선정 *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투자증권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름
인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주기 : 매분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 ○ 평가자 : 인덱스 & ETF운용팀 ○ 평가대상 : 증권사 및 선물회사 ○ 평가절차 :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증권사를 평가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등급별로 분류 한 후 등급별 최대 배분비율 결정 ○ 평가항목 : 주문수행능력, 중개수수료율, 리서치 지원 및 기타 운용기여도 등

주1) 각 항목별 평가 배점 및 평가항목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선정 기준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주기: 분기 1회 ○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부여 - 각 투표권자 점수 평균 결과 상위 10개사를 A그룹, 차상위 10개사를 B그룹으로 선정(그룹별로 배정 한도에 차등을 둠) ○ 평가기준: 매매 체결능력, 중개사 리스크, 중개수수료, 시장정보 제공능력, 시장조성 능력
국내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 수행 능력, 중개수수료율, 리서치 지원 및 펀드 활성화 관련 등 ○ 기간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등급별로 차등 배분

	실시
해외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및 배점(선물회사) ○ 주문수행능력 60% ○ 리서치 20% ○ 중개수수료율 10% ○ 기타 서비스 10%
인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주기 : 매분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 ○ 평가자 : 인덱스 & ETF운용팀 ○ 평가대상 : 증권사 및 선물회사 ○ 평가절차 :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증권사를 평가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등급별로 분류 한 후 등급별 최대 배분비율 결정 ○ 평가항목 : 주문수행능력, 중개수수료율, 리서치 지원 및 기타 운용기여도 등

주1) 각 항목별 평가 배점 및 평가항목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계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파생형	법령상 운용규제에 따른 분류로서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